



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

수신 각 체육관장

참조 사범

제목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의무화 협조 건

1. 귀 체육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-4470(2011.12.2)호 및 시 교통정책과-16567(2011.12.29)호와 시 체육지원과-27호(2012.1.2)와 관련입니다.
3. 위호와 관련 「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이 2011년 8월 31일에 개정. 공포되어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(태권도, 학원 등 체육시설 차량포함)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 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 ※ 광각 실외후사경 미부착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,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3만원 부과
4. 아직까지도 미설치 체육관에서는 조속히 광각실외후사경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첨부 :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(발체본) 1부
 홍보물 자료 1부. 끝.

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장



담당 김기연 사무국장 김옥태 전무이사 김화영
 전 결

시행 율태협 제2012-005호 (2012.01.06) 접수 ()

우. 681-270 울산광역시 중구 영포로 85(남외동) / <http://www.ulsantkd.org>

전화 052)281-2455/2100 / 전송052)292-0166 / E-mail : ulsantk@hanmail.net / 공개